

#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761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7월 5일  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, 다양한 교육지원 목적과 취지를 수용하고,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다양한 교육지원 목적과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(안 제7조).

#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 조제목 중 “취약계층 교육지원”을 “교육지원”으로 한다.

#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## 〈 신·구 수정조문대비표 〉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7조(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)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<u>셋째</u> 자녀 이상의 아동·청소년으로,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로 정한다. 다만, 재혼 가정의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이나 「가족관계등록법」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하되,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.</p> <p>7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,</p>	<p>제7조(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)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<u>둘째</u> 자녀 이상의 아동·청소년으로,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로 정한다. 다만, 재혼 가정의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이나 「가족관계등록법」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하되,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.</p> <p>7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,</p>	<p>제7조(교육지원 사업)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7.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자녀에 해당하는 아동·청소년. 다만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경우는 배우자, 자녀, <u>손자녀에 해당하는</u> 아동·청소년으로 한다.</p> <p>8.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·청소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자녀에 해당하는 아동·청소년. 다만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경우는 배우자, 자녀, <u>손자녀 이하 6대손까지의</u> 아동·청소년으로 한다.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8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조제목 중 “취약계층 교육지원”을 “교육지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6호 중 “셋째”를 “둘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손자녀에 해당하는”을 “손자녀 이하 6대손까지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〈 신 · 구 조문대비표 〉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)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<b>셋째</b> 자녀 이상의 아동·청소년으로,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로 정한다. 다만, 재혼가정인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이나 「가족관계등록법」 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하되,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.</p> <p>7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, 자녀에 해당하는 아동·청소년. 다만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인 경우는 배우자, 자녀, <u>손자녀에 해당하는</u> 아동·청소년으로 한다.</p> <p>8. (생략)</p>	<p>제7조(교육지원 사업)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<b>둘째</b> 자녀 이상의 아동·청소년으로,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로 정한다. 다만, 재혼가정인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이나 「가족관계등록법」 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하되,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.</p> <p>7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, 자녀에 해당하는 아동·청소년. 다만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인 경우는 배우자, 자녀, <u>손자녀 이하 6대손까지의</u> 아동·청소년으로 한다.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